

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우달식)

나. 전화번호 : 02-3481-8843

2. 명칭 : 다중수원 워터 블랜딩을 이용한 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절감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중수원(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 기반 다공정 워터 블렌딩 기술을 활용한 중소규모 지능형 물 생산 시스템 무인자동 운전제어 기술로서,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단독 공정 대비 20% 이상의 에너지 및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의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임

<범위>

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의 다중수원을 활용한 다공정 워터 블렌딩 기술을 통해 기존 해수 단독 공정 대비 운영전력의 20% 이상을 절감하며, 농축수 부하량을 감소시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8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 증명 방식 등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산적 고체화물 등 특수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안 제16조의5 제3항)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운송서류에 기재하는 품명(BCSN)의 세부내용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위험물 명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

나.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의2 제1항)